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5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김영희 의원 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「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면서 아동 및 여성의 보호에 관한 「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을 “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함(안 제명).
- 나. “아동·여성 보호”를 “여성안전”으로,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“여성폭력”으로 각각 “아동”을 삭제하고 변경함(조례 본칙).
- 다.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“여성폭력”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라.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과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함(안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15조).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19년 11월 19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## 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”를 “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오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여성폭력”이란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각각 “여성폭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각각 “여성폭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“시장은 여성폭력”으로,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여성안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동·여성 보호와”를 “여성안전과”로,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여성안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오산시 의회”를 “오산시의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각각 “여성폭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아동·여성 보호와”를 “여성안전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“여성폭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아동·여성보호”를 “여성안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위기 아동 및”을 “위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아동·여성보호를”을 “여성안전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아동·여성”을 “여성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”를 “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”로, “주사”를 “팀장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각각 “여성폭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아동·여성 보호를”을 “여성안전을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“여성폭력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“여성폭력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아동·여성폭력”을 “여성폭력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실비보상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·여성보호시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</u></p>
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·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오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<u>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<u>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아동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학교폭력, 유괴 등을 말한다.</u></p>	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여성폭력”이란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을 말한다.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3조(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</u></p>	<p><u>제3조(책무) ① -----</u> <u>----- 여성폭력 -----</u></p>

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"지역연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아동·여성보호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
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여성폭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----- 여성폭력 -----  
-----  
----- 여성폭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 시장은 여성폭력 -----  
-----  
----- 여성안전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여성안전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여성안전 -----  
-----

이 된다.

1. 오산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 
시의원 1명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  
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3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 
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  
조 또는 의료기관
4. 5. (생략)
6. 그 밖에 아동·여성 보호와  
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  
는 시설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  
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 
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  
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7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  
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  
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  
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  
검에 관한 사항
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 
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  
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  
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
-----.

1. 오산시의회 -----  
-----
2. 여성폭력 -----  
-----
3. 여성폭력 -----  
-----
4. 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 여성안전과 -----  
-----  
-----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다만, 새로 위촉된 위원  
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 
간으로 한다.

제7조(지역연대의 기능) -----  
-----  
-----.

1. 여성폭력 -----  
-----
2. 여성안전 -----  
-----
3. 위기 -----  
-----



4. 지역 내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

5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제10조(간사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
2. (생략)

3.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② (생략)

제12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4. ----- 여성안전을 -----  
-----  
-----

5. 여성-----  
-----  
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----- 팀장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-----  
-- 여성폭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여성폭력 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여성안전을 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사업비의 지원) ----- 여성  
폭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p>제13조(관련정보의 제공) 시장은 <u>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</u>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<u>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</u>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15조(실비보상) 시장은 <u>지역연대 및 아동·여성보호시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</u>에게는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13조(관련정보의 제공) -----  <u>여성폭력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-----  ----- <u>여성폭력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--	---